

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출자 동의안

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940
------	-----

2019. 8. 30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8월 7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8월 13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】

-제2차 기획경제위원회(2019.8.30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
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)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·
융자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돌봄·주거 등 사회문제를
해결하고자 2013년도부터 사회투자기금을 조성·운영하고 있음

나. 사회투자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육성하는 임팩트 투자조합을 결성·운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, 2020년 사회투자기금 출자 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추진근거

-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
- 「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
- 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
나. 추진 방향

- 정부 모태펀드, 사회투자 전문기관과 투자조합 조성 및 사회투자 기금 출자
- 서울시 관내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투자·보육 연계 지원으로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(투자→성장→자금회수→재투자)

다. 조성형태 :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

조성형태	근거법령	투자대상	설립주체
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	중소기업창업지원법	비상장창업자, 벤처기업 등	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

구성형태	근거법령	투자대상	설립주체
신기술사업 투자조합	여신전문금융업법	신기술사업자	신기술사업금융업자
한국벤처 투자조합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	중소기업, 벤처기업 등	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

라. 조합 조성·운영절차

- 조합 존속기간 : 8년 이상
- 투자조건 : 투자대상에 서울시 출자금의 150% 이상 투자
- 투자대상 :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

구분	대상	비고
지역	서울 소재	본사, 공장 또는 사업소가 서울에 소재
정의	사회적경제 기업 등	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의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사업
형태	창업기업 등	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등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인 벤처기업, 기술·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신기술사업자 등

- 운용사 공모방법 : 제한경쟁입찰
 - 신청자격 :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10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

마. 출자 필요성

- 사회적금융은 재무적 가치 외에 사회적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자금을 투융자 하는 금융으로, 국내 사회적금융 시장규모 미미

-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혁신적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임팩트금융 생태계를 조성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및 서로 돌봄·사회주택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필요

바. 소요예산 : 10억원

Ⅲ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동의안은 민간 사회투자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육성하는 임팩트 투자조합을 결성·운용하기 위해 사회투자기금에 출자하기에 앞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.

나. 서울시 임팩트투자조합 조성 현황

- 사회적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금융의 국내시장 규모가 미미한 상황에서, 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의 출자를 통한 임팩트 투자¹⁾조합 결성으로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음.
 - 2018년 4월, 임팩트투자조합(이하 “투자조합”) 결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출자(10억원) 동의를 받고, 같은 해 11월 145억원 규모의 1호 투자조합을 결성했음.

1) 투자를 창출하면서도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익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, 최근 빈곤과 기후변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투자형태로 주목받고 있음

- 2018년 11월에는 2호 투자조합을 위한 출자(10억원) 동의를 받고, 2019년 6월 운용사를 선정하는데 이어, 9월 투자조합을 결성할 예정이다.

〈서울시 1호 임팩트투자조합 조성 현황〉

- 조합명 : 다담 4차산업 소셜임팩트 투자조합
- 운용사 : 다담인베스트먼트
- 조성년월 : 2018년 11월
- 조합형태 : 한국벤처투자조합
- 조성규모 : 145억원
 - 서울시 10억원,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100억원, 대전시 10억원, 다담인베스트먼트 3억원 등
 - 20억원(서울시 출자액의 200%) 이상은 서울시 소재 기업에 투자
- 존속기한 : 8년
- 출자현황 : 83.38억원(2019년 7월 기준, 조성규모의 57.5%)
서울시 5.75억원 출자, 2019년 중으로 약정금액 전액출자 예정

〈서울시 2호 임팩트투자조합 조성 현황〉

- 조합명 : 비하이임팩트투자조합 1호
- 운용사 : 비하이인베스트먼트
- 조성년월 : 2019년 9월 (예정)
- 조성규모 : 150억원 (예정)
 - 서울시 10억원,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100억원, 우리은행 20억원 등
 - 20억원 이상은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사업에 투자
- 존속기한 : 8년

- 이번에 후속 출자를 통해 결성되는 3호 투자조합은 서울시의 1호, 2호 투자조합과 유사한 조건으로 결성되고 운용될 예정임.
 - 투자조합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, 신기술사업 투자조합, 한국벤처 투자조합 등 설립주체와 투자대상에 따라 그 형태가 결정되고,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운용기관의 책임 하에 운용함으로써 투자위험에 대한 분산과 장기적·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
 - 투자조합의 존속기한은 8년 이상이며, 서울소재 사회적경제기업에 서울시 출자금의 150% 이상을 투자해야 함.

다. 임팩트투자조합 출자의 적정성

- 민간 자금과 공동으로 결성하는 투자조합은 기존의 사회투자기금을 통한 융자지원보다 투자 규모를 확대할 수 있고, 더 많은 사회적기업 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.
- 또한 사회투자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투자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, 자금 회수, 재투자로 이어지는 사회적경제 선순환 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 투자조합의 구조상 수익률을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금 회수도 보장받을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, 합리적 판단기준 없이 매년 10억원의 새로운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는

신중한 판단이 필요함.

- 현재 첫 번째 결성된 투자조합도 전액 출자 전이며 수익성과를 알 수 없는 바, 운용성과를 살펴본 후 추가 조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수 있음.
- 또한 다수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서울시 소재에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, 동의안에서 제시한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주체에 대한 의무투자 비율(150% 이상)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10명, 전원찬성)

V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출자 동의안

의안 번호	94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·
융자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돌봄·주거 등 사회문제를
해결하고자 2013년도부터 사회투자기금을 조성·운영하고 있음
- 나. 사회투자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육성하는 임팩트
투자조합을 결성·운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,
2020년 사회투자기금 출자 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추진근거

-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
- 「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
- 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
나. 추진 방향

- 정부 모태펀드, 사회투자 전문기관과 투자조합 조성 및 사회투자
기금 출자
- 서울시 관내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투자·보육
연계 지원으로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(투자→성장→자금회수→재투자)

다. 조성형태 :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

조성형태	근거법령	투자대상	설립주체
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	중소기업창업지원법	비상장창업자, 벤처기업 등	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
신기술사업 투자조합	여신전문금융업법	신기술사업자	신기술사업금융업자
한국벤처 투자조합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	중소기업, 벤처기업 등	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

라. 조합 조성 · 운영절차

- 조합 존속기간 : 8년 이상
- 투자조건 : 투자대상에 서울시 출자금의 150% 이상 투자
- 투자대상 :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

구 분	대 상	비 고
지 역	서울 소재	본사, 공장 또는 사업소가 서울에 소재
정 의	사회적경제 기업 등	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의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사업
형 태	창업기업 등	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등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인 벤처기업, 기술·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신기술사업자 등

- 운용사 공모방법 : 제한경쟁입찰
 - 신청자격 :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10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

마. 출자 필요성

- 사회적금융은 재무적 가치 외에 사회적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자금을 투융자 하는 금융으로, 국내 사회적금융 시장규모 미미

-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혁신적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임팩트금융 생태계를 조성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및 서로 돌봄·사회주택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필요

바. 소요예산 : 10억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(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)

⑤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 중소기업·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1.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
2. 신기술사업투자조합
3.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
4.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

-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

- 지방자치법 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(중소기업자의 범위)

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(이하 "중소기업 시책"이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
가.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2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
3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○ 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2020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에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정책팀 옥창석(☎2133-5479)